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11.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554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 28. 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

나. 상정의결

-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2. 2. 11.)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은승일)

가.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연구과제 선정절차 확립,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안 제5조)
-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연구의 공정성 강화(안 제15조)
-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및 관련 근거 규정을 완비하여 연구의 투명성 제고(안 제16조)
-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및 관련 근거 규정을 완비하여 연구의 투명성 제고

(안 제16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호~제56호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2021.10.1. ~ 2021. 10. 21.) 결과, 내부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 일부 수정

입 법 예 고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② (생략)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u>심의</u> 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심</u> <u>의·의결</u> -----.
제14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② (생략) ③ 주관부서의 장은 <u>용역 결과</u> 를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4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용역결과</u> ----- -----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u>용역 결과의 평가과정</u> 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여부	제15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 <u>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u> ----- ----- -----

<p>를 판정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용역계약 체결 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p> <p>제16조(용역결과의 공개) ①·② (생략)</p> <p>③ 구청장은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여부에 대한 재검토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p>	<p>---</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연구부정행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p> <p>제16조(용역결과의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 ----- -----.</p>
---	--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정책연구용역·학술연구용역·연구용역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용어를 다양하게 쓰고 있으나 모두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용역은 정책개발·연구를 위한 용역으로서 학문에 관한 연구이므로 계약집행기준 상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함.
 - 지방계약법에 따라 구는 10억원 이상 규모의 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나 대부분 1억원 이하 용역으로 심의를 받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짐.
 - 한편, 과제 선정, 연구결과 공개 등 연구용역의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음.

○ 본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은

- 안 제4조(용역의 추진 등)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용역’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 제2조제1호1)에서 이미 약칭되어 사용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한 것임.
- 안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2항에서는 외부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제4항을 신설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사항을 추가하였는 바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전반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하여 검증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상 연구부정행위 유형 >

구분	정의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안 제7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서는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고
- 안 제15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신설규정에서는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하여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속기관²⁾에 통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바 조문을 <예시>³⁾와 같이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정책 수립·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용역(「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3) <예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자에게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6조(용역결과의 공개)제1항에서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오기된 법령명을 바로잡고 용역결과를 ‘3개월 이내’에서 공개 시점을 ‘지체 없이’로 규정하여 신속한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하고, 연구용역의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2항을 신설하여 기존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요약본을 공개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여부에 대한 재검토 시점을 적시하도록 한 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54호

제안일자 : 2022.2.11.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의결을 구청장 통보로 수정(안 제15조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경우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을 “경우” 로 하고, “의결할 수 있다” 를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신 설></p>	<p>제15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되는 <u>경우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u> 연구부정행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u>의결</u>할 수 있다.</p>	<p>제15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 ----- <u>경우</u> ----- ----- ----- <u>의결하여 구청장에게</u> <u>통보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4
----------	-----

제출연월일 : 2022. 1. 28.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기획예산과

1.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연구과제 선정절차 확립,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안 제5조)
- 나.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연구의 공정성 강화(안 제15조)
- 다.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및 관련 근거 규정을 완비하여 연구의 투명성 제고(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호~제56호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21.10.1. ~ 2021.10.21.) 결과, 내부의견을 수렴하여 조
례안 일부 수정

입 법 예 고 안	수 정 안
<p>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② (생략)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u>심의</u>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심의·의결</u>----- --.</p>
<p>제14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② (생략) ③ 주관부서의 장은 <u>용역 결과</u>를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생략)</p>	<p>제14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용역결과</u>----- ----- -----.</p>
<p>제15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u>용역 결과의 평가과정</u>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② <u>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단체에 대한</u></p>	<p>제15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 <u>제14조 제1항에 따른 평가</u>----- ----- ----- -----.</p> <p>② <u>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에 이를</u></p>

<p><u>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용역계약 체결 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u></p> <p>제16조(용역결과의 공개) ①·② (생략)</p> <p>③ <u>구청장은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여부에 대한 재검토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u></p>	<p><u>통보하는 등 연구부정행위자에 게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u></p> <p>제16조(용역결과의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u>----- ----- ----- -----.</p>
---	---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책연구용역”을 “용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 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중 “정책연구용역”을 “용역”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서”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역”을 “심의대상 용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심의 대상”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을 “특정”으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를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의결”을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용역 결과”를 “용역결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

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연구부정행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를 “후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정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주요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여부에 대한 재검토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용역의 추진 등) ①·② (생략)</p> <p>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자체심사 후 <u>정책연구용역</u>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u>호선</u> 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략)</p> <p>2. 위촉직 위원</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지방행정 및 <u>정책연구용역</u>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p>	<p>제4조(용역의 추진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용역</u> ----- ----- -----.</p> <p>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성</u> <u>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 ----- <u>호선한다.</u></p> <p>④ -----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u>용역</u> ----- ----- -----</p>

⑤ (생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3. (생략)

<신설>

- 4. (생략)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생략)
-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할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

- 1. ~ 3. (현행과 같음)
- 4.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 심의·의결-----.

- 1. (현행과 같음)
- 2. -----
----- 심의대상 용역-----
- 3. ----- 심의대상 -----

② 특정 -----
-----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는 -----
----- 심의·의결-----.

- ③ -----

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

② (생략)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제15조(용역결과의 공개) 「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

----- 심의
·의결-----.

제14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용역결과-----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연구부정행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행정효

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 후지체없이 -----

-----.

<단서 삭제>

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6조 · 제17조 (생 략)

② 구청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정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주요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
구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여부에 대한 재
검토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17조 · 제18조 (현행 제16조 및 제17
조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기획예산과 행정8급 나지혜(02-3423-5454)